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6. 14 선고 2023가단618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11. 3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내지 11항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1. 11.
3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12,564,9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64,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소외 주식회사 E(변경 후 F 주식회사)은 2017. 11. 6. 소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신차자동차할부 대출거래약정을 하였고, D과는 주식회사 G의 위 채무를 D이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G과 D은 위 채무의 원리금 납부를 지체함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23. 5. 17. 위 대출금 채권(2023. 4. 30. 기준 원리금 등 36,177,348원, 2023. 8. 23.자 기준 37,151,718원)을 F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023. 5. 31.경 F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D에게 양도통지인이 ‘F 주식회사’로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3. 6. 2.경 송달되었다.

나. 피고와 D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D과 피고의 모인 망 H은 2021. 무렵 사망하였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D, 피고 외에 3명의 형제가 망 H의 상속인이다.

2) D, 피고 및 나머지 3명의 형제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1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21. 12. 30. 접수 제2877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22. 1. 28.자 접수 제20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I에게 2021.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21. 12. 30. 접수 제2877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 외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1/5)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D의 형제인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대신 D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상속인에게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D의 경우 사업이 파산상태로 계좌이체가 불능하여 직접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사용불능 토지이거나 문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위 법리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제 5 내지 11 부동산이 종중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질적 가치 여부는 사해행위 성립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상회복 방법

가) 관련법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중 D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2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전득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2 내지 11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D의 이 사건 제2 내지 11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12,564,930원(= 62,824,650원 × 상속지분 1/5)이다. 그리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소제기 당시에 이미 37,151,718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내지 11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2 내지 11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D의 상속가액인 12,564,9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D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D이 상속받은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2 내지 11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12,564,9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564,9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훈

별지